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6-52
----------	-------

제출년월일 : 2026. 4.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에 설치되는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안 제1조~제3조)
- 나.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안 제4조~제5조)
- 다. 위탁운영 및 이용료(안 제6조~제7조)
- 라. 이용제한 및 보험가입(안 제8조~제9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 「관광진흥법」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6. 3. 5.~2026. 3. 25.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설치되는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운영되는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 워터파크형 물놀이장, 공원 내 물놀이장 등의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물놀이장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구에 설치·운영하거나 제6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물놀이장에 적용된다.

제4조(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에 상시 또는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물놀이장 운영 기간과 이용 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되, 구 홈페이지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 등)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에 대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이용수칙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되, 물놀이장의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물놀이장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이용 및 이용료)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에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
2.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
4.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용료 등(제7조제3항 관련)

이용료 기준			
대 상	구 분	요 금	비 고
청소년	14세~18세	2,000원 이하	20명 이상 단체 이용 시 인솔자 무료 (20명당 1명)
성인	19세~64세	3,000원 이하	

※ 이용료와 별도로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사물함 이용료, 물놀이용품 대여 등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안 제4조(설치·운영), 제6조(시설의 위탁운영), 제7조(이용 및 이용료), 제9조(보험 가입)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마포구가 설치하는 물놀이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시설 또는 행사주최 등이 계절적·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총 소요예산은 3억 원 미만으로 추산되며, 또한 시설별 규모와 운영방식 등이 상이하여 일괄적인 추계는 불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육체육국 체육진흥과 김성국
연 락 처	02-3153-9873